

2021년 10월 25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방송 · 인터넷 · 통신은 10월 24일 11시부터 보도)

동물복지정책과 과 장 김지현(044-201-2371), 사무관 한 민(2377) / 제공일: 10월 22일(총 3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2021년 하반기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 - 농식품부 · 지자체 합동, 10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-

《 주 요 내 용 》

□ (개요) 농식품부·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반려동물 영업자 대상
법령상 시설·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실태 등 점검

* 올해 상반기(6.7.~6.30.)에 이어 하반기에도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 추진

○ (대상) 전국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(장묘·판매·미용 등) 약 1,000곳

○ (기간) 2021. 10. 25.(월) ~ 2021. 12. 17.(금) (8주간)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'농식품부')는 10월 25일부터
12월 17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2021년 하반기 반려동물
영업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.

○ 이번 점검 대상은 동물장묘업·판매업·미용업 등 「동물보호법」 상
반려동물 관련 영업자(총 8종)* 약 1,000곳으로, 지난 상반기
특별점검**보다 점검 대상과 기간을 한층 확대했다.

* 동물장묘업·판매업·수입업·생산업·전시업·위탁관리업·미용업·운송업 ('20. 기준 총 19,285개소)

** '21.6.7.부터 '21.6.30.까지 영업자 총 114곳 점검 (30곳에서 미흡사항 49건 적발)

○ 점검 인력은 각 지자체에서 광역점검반(시·도 및 시·군·구 합동)을,
농식품부(농림축산검역본부 포함)가 중앙 특별점검반을 구성한다.

□ 이번 점검 시 반려동물 영업자의 시설·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실태를 확인하여 동물 보호·복지 수준을 지속 강화한다.

○ 동물생산업자의 적정 인력 기준*, 동물판매업자의 매매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** 등 과거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.

* 사육·관리 인력 기준 : 12개월령 이상 개·고양이 75마리당 1명

** 매매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 : 동물판매업 영업 등록번호, 동물의 출생일, 동물의 생산(수입)업체, 예방접종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

○ 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 의무사항* 이행 실태도 철저히 점검하고, 향후 시행 예정 사항** 설명·안내(리플릿 활용)를 병행한다.

* ('21.2.~) 판매업: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, ('21.6.~) 운송업: 동물 운송 전·후 차량 소독, 전시·위탁관리·미용·운송업: 서비스 이용자에게 동물등록제도 안내

** ('22.6.~) 생산업: 사육설비 면적 의무화(가로/세로가 동물 몸길이의 2.5배/2배 ↑), 미용·운송업: CCTV 설치 ('23.6.~) 생산업: 인력 기준 강화(개·고양이 50마리당 1명)

○ 동물생산업·장묘업을 중심으로 무허가·미등록 업체 특별 단속도 함께 실시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.

□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반려동물 영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보완 실태를 추후 재점검하고,

○ 무허가·미등록 업체는 고발 조치 등 엄격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.

* 무허가·미등록 영업 :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

□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“반려동물 영업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자신의 영업 시설과 운영 상황을 자체 점검해 보는 등 동물 보호·복지를 위해 힘써달라”고 당부했다.

참 고

홍보 리플릿 :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개정('21.6.17.)

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

영업장 기준이 더욱 강화됩니다

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개정·공포('21.6.17.)

- 1 영업별 시설·인력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
- 2 행정처분 기준 강화
- 3 새로운 영업형태 기준 마련

농림축산식품부

1 영업별 시설·인력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

동물생산업

사육설비 크기 기준

권장 → 의무

(공포 후 1년 후 시행)

* (가로 및 세로) 각각 동물 몸길이의 2.5배 및 2배 이상 (높이)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

돈장* 내 평판 설치 비율

30% → 50% 이상

(공포 후 1년 후 시행)

* 돈장 :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설비

* 신규영업자는 돈장 설치 금지이며, '18.3.22. 이전에 신고한 영업자는 돈장 바닥에 일정 면적 이상의 평판한 판 설치 의무

관리인력 확보 기준

75마리당 1명 이상 → 50마리당 1명 이상

(공포 후 2년 후 시행)

출산과 출산 사이 기간

8개월 → 10개월

(공포 후 3년 후 시행)

동물판매업

-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금지
- 경매 방식을 통한 거래 알선·중개 시 개체관리카드의 필수정보사항 확인 후 경매 진행

동물운송업

- 운송전후 차량 소독 및 기록 의무
- 사람과 동물의 공간 구획을 위한 망, 격벽 또는 가림막 설치 (공포 후 1년 후 시행)
- 개별 이동장(예: 자 또는 안전벨트) 설치 (공포 후 1년 후 시행)
- 2년 이상의 운전경력 보유자 (공포 후 1년 후 시행)

동물미용·운송업

- 미용·운송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설치 및 30일 간 보관 의무화 (공포 후 1년 후 시행)

동물장묘업

- 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경우에 소유자 등에게 장례확인서 발급
- 신문, 인터넷 등으로 영업 홍보 시 영업등록증을 게시해야 함

동물위탁관리업

- 위탁관리하는 동물을 찾가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 제공

동물전사·위탁관리·미용·운송업

-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사항 및 등록방법 안내 의무화
- * 등록대상 :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
- * 등록방법 : 사·군·구 또는 등록대상자(동물병원, 동물보호센터, 동물보호단체, 동물판매업)에게 방문·신청

공동사항

- 영업장 내부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업등록(허가)증 및 요금표 게시

2 행정처분 기준 강화

영업정지

동물생산업자 또는 경매방식을 통한 동물판매업자가 시설·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시 영업정지 기준 강화

	현행	개정
1차	7일	15일
2차	15일	1개월
3차	1개월	3개월

3 새로운 영업 형태 기준 마련

동물장묘업

수분해장(水分解葬)* 추가 (공포 후 6개월 후 시행)

* 화학용액을 사용해 동물의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

동물미용업

이동식 미용업 관련 차량 설비 기준 마련

* 작업대 규격, 급수·오수탱크, 조명 환기장치, 미용기구, 소독장비 등

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영업장의 시설·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실천하도록 관리·감독하겠습니다.

농림축산식품부